

객실 판매대행 계약서

(주)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이하"갑"이라 칭함)와 TK트래블(이하"을"이라 칭함)는 갑의 회원이 우선 예약 후 잔여 숙박시설(이하 "객실이라 칭함")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객실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 (이용시설)

이용 시설은 용평리조트(호텔 및 콘도 포함)와 비체펠리스의 객실 및 부대업장으로 한다.

- 용평리조트 사업장 주소(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 비체펠리스 사업장 주소(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78

제 2조 (계약기간)

가. 객실의 이용 계약기간은 2023년 05월 01일부터 2024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15일전까지 계약 쌍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본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한다.

제 3조 (업무제휴 세부내용)

가. "갑"은 "갑"의 상품판매에 관한 객실, 요금정보 및 부대시설 등의 적법한 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한다.

나. "갑"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적법한 것임을 보증하며, 동 정보의 내용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갑"은 콘텐츠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정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임한다.

제 4조 (계약객실 및 요금)

가. 객실요금은 "갑"이 "을"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객실요금은 입금이 기준이며, 객실 판매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객실요금 변경적용 시에는 “갑”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을”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 5조 (객실요금 정산 및 지불방법)

가. 객실요금 지불방법은 월 1회 “갑”이 ”을”에게 청구하고 “을”은 청구자료를 정산하여 “갑”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또는 “갑”의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 용평리조트 : KEB하나(52023), 294-910004-64704, 예금주 (주)에이치제이 매그놀리아

- 비체펠리스 : 농협중앙회(52005), 467087-51-075437, 예금주 (주)에이치제이 매그놀리아

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 매출에 대하여 입금이 기준 익월 말일 전까지 입금한다. “을”은 계약 시, 5,000,000원(오백만원)의 지급보증보험 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질권을 “갑”에게 제공한다.

단, 거래 금액 기준 보험 금액 조정가능.

다. 2개월 이상 연체 또는 보증보험금액의 80% 이상 정산금액이 발생될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객실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6%를 “을”에게 부과한다.

제 6조 (예약 및 취소)

가. “을”은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갑”에게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을”은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최소한 5일전까지 취소하여 예약 후 미 사용 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갑”은 “을”의 객실예약 후 당일 취소/변경 및 NO SHOW 발생시 1박 객실 요금의 전액,
1일전 취소 시 1박 객실요금의 50%, 2일전 취소 시 1박 객실요금의 30%, 3일전 취소 시 1박
객실요금의 20%, 4일전 취소 시 1박 객실요금의 15%를 “을”에게 부과한다.

제 7조 (준수의무)

“을”은 “갑”의 숙박약관 및 시설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관리비)

“갑”은 사용기간 동안 객실 투숙 정원에 한하여 숙박에 필요한 침구시설 및 비품 등을 무료 제공한다.
(단, 추가 요청 시 별도 요금이 발생되며 현장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비는 정한 객실요금에 포함되며, 전화료, 손망실료, 인원추가료, 침구추가료, 전망추가료, 시간초과료 등 이용 고객 개별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은 “을”이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9조 (책임)

“갑”이 정한 목적물에서 화재, 도난 및 시설물의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갑”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제 10조 (계약해지 및 변경)

- 가. “갑”과 “을”은 쌍방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전에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 행정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갑”과 “을”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또는 지연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다.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체납처분을 받았을 경우
 - 2)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를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 4)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상품이용대금이 3개월 이상 정산이 안될 경우

제 11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그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3조 (관할법원 및 보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분쟁에 관해서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 14조 (윤리경영의 준수)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갑"의 임직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경제상의 이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갑"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갑"의 심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3년 04월 20일

“갑”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상 호 명 : (주)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

대 표 이 사 : 신 달 순, 임 학 운 (인)

“을”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이문로39, 5층(이문동, 명경빌딩)

상 호 명 : TK트래블

대 표 이 사 : 강 일 구 (인)

